■ 산림보호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7. 2.>

산불경보별 조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
산불경보 구 분	소속 공무원·직원의 산불 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	조치기준
관 심	○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·대기	○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배치
주 의		○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정 배치 ○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
경 계	○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 ○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	○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○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 중지
심 각	○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 ○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	○ 민간·사회단체 및 산불유관기관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○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○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

<비고>

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의 대기 인원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